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해 외 농 업 · 산 립 자 원 개 발 협 력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반입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으

로 정부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추 것 및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을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식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서,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산림자원을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보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4.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지원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산림협력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3.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 인력 보유 현황 및 인력 배치 계획서

3. 업무수행 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연구 또는 사업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6.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

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기간	일
사업자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대상자 (현지사업자)	상호	국가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사업명		대상 자원	
	투자규모		투자비율	
	사업장 소재지		개발방법	
※ 아래 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개발방법 []투자 규모비율 []계약 상대방 []대표자 []지분 []사업장 소재지 []그 밖의 변경사항				
변경 사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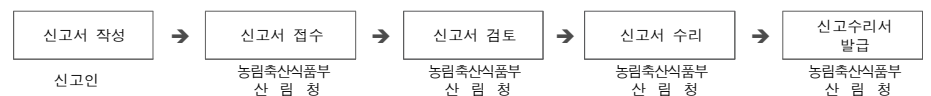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 림 청 장 귀하

신고인 (변경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처 리 절 차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고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거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확인·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거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제농업협력사업 []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국제산림협력사업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명 팩스번호 직위 전자우편주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계획서 2. 인력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 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 최근 3년간 연구 또는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6.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의2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지원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지정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	-----------------------------	---	-----------------------------	---	---------------------------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호			
대상자	사업자 상호		
	대표자 성명		
반입대상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물량	반입국가 및 지역
반입 가격			
반입 시기			
명령의 사유 및 내용			
보상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합니다.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반입명령 이행계획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물량
	이행방법 및 경로	
	이행 완료 예정 일자	
	비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관
청구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검토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결정 내용 통지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앞쪽)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

청구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급액	금 원정(₩)	

결정내용은 뒤쪽에 작성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첨부된 손실보상금 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상금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용도: 손실보상금 청구 및 수령용) 1부
- 나. 청구인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 사본 1부

2.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결정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뒤쪽)

결정 내용	
항목	보상금 합계
금액	금 원정(₩)
[산출명세]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의2 제3항에서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산림협력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3.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계획서

2. 인력 보유 현황 및 인력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 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
에 관한 서류

5.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
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연구 또
는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
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
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
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6.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
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
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
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
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
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신 설>

해야 한다.

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
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
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
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
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
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
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
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
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신 설>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신 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